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하한 상향 〉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243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6. 15.

다. 회부연월일 : 2026.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2021년 158명에서 2024년에는 19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 912명의 위반자 가운데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48명에 그쳐 범죄 예방 효과를 떨어뜨리고 성실한 병역 이행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병역기피나 감면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 하한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4조).

Ⅲ. 검토의견

☐ 현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귀국명령 위반 미귀국자 포함)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처벌의 하한을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u>1년</u>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 ----- ----- ----- ----- ----- ----- ----- <u>3년</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¹⁾에서는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제94조제1항²⁾에서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³⁾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대한 이러한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또는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②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현황('21~'26년) ＞

('26.5.31.기준, 단위: 명)

구 분	'26년	'25년	'24년	'23년	'22년	'21년
인 원	101	193	197	196	185	158

□ 또한 최근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현황을 보면, 전체 위반자 1,030명 중 실제 형을 선고받은 사람(징역, 집행유예, 선고유예)은 28명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하고, 이들 28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명이며, 나머지 20명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대부분(71.4%)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형사처분 현황('21~'26년) ＞

('26.5.31.기준, 단위: 명)

연도별	계	징역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기소(수사)중지	기 타
계	1,030	8	18	2	33	858	111
'26년	101	-	-		1	61	39
'25년	193	-		1	6	164	22
'24년	197	1	1		5	166	24
'23년	196	1	2		5	180	8
'22년	185	2	7		11	157	8
'21년	158	4	8	1	5	130	10

* 기타(111) : 경찰수사중(66), 검찰수사중(20), 각하(2), 고발취소(13), 무혐의(8), 사망(2)

- 더욱이 형을 선고받은 28명의 선고형을 보면, 20명이 징역 1년 이하의 형(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현행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계4)	1년 초과	1년 이하
28	8	20

- 이에 개정안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병역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예방효과를 높임으로써 공정한 병역 문화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형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상향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부분 제한되어 처벌의 실효성과 병역기피 억제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4) 세부내역 참고자료 참조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그리고 법정형 하한을 현행 병역의무 이행기간⁵⁾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병역기피에 따른 기대이익을 차단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를 법정형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은 법정형의 설정이 형벌체계 전반의 정합성, 균형성 및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병역법」 제88조의2(대체역 편입의 허위, 징역 1~5년)는 병역의무의 충실하고 공평한 이행이라는 보호법익이나 적극적 수단을 통한 병역면탈이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죄질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범죄가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형벌 체계상 불균형의 소지가 있음.

또한, 「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제91조의2제1항

5) 육군기준 1년 6개월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은 개정안의 범죄보다 중범죄 (징역 1~10년)임에도 불구하고, 하한 기준 상향으로 개정안의 범죄가 더 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있음.

둘째,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 상향될 경우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 있는 양형재량이 상당 부분 축소될 우려가 있음.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징역 3년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 역시 크게 제한될 수 있음.

□ 참고로 현행 「병역법」에서도 ‘1년 이상 〇년 이하 징역’ 또는 ‘〇년 이하 징역’으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법 정 형
제86조 (도망·신체손상 등)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 잠적 또는 신체를 손상, 속임수를 쓴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제87조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①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은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③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	6개월 이하 징역
제87조의2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한 사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88조 (입영의 기피 등)	① 현역입영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등으로부터 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 등	3년 이하 징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등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등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제88조의2	대체역 편입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	1년 이상 5년

구 분	내 용	법 정 형
(대체역 편입의 허위)	람	이하 징역
제89조 (사회복무요원 등의 대리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사람을 대리하여 복무한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제91조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 등으로서 병역의무를 연기·면제시키거나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등을 발급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제91조의2 (대체역의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① 공무원·의사·변호사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에 편입시킬 목적으로 증명서 등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② 증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체역으로 편입시킬 목적으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94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①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또는 국외 체류 등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②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또는 국외 체류 등	3년 이하 징역

□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기피 등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병역법」상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08

※ 참고자료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현황

• 형사처분 현황('21~'26년)

(‘26.5.31.기준, 명)

연도별	계	징역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기소(수사) 중지	기 타
계	1,030	8	20	33	858	111
'26년	101	-	-	1	61	39
'25년	193	-	1	6	164	22
'24년	197	1	1	5	166	24
'23년	196	1	2	5	180	8
'22년	185	2	7	11	157	8
'21년	158	4	9	5	130	10

* 기타(111) : 경찰수사중(66), 검찰수사중(20), 각하(2), 고발취소(13), 무혐의(8), 사망(2)

• 집행유예(선고유예) 선고기간별 현황

(‘26.5.31.기준, 명)

연도별	계	집행유예									선고유예 (징역6월)
		소계	징역 1년6월	징역 1년4월	징역 1년2월	징역 1년	징역 10월	징역 8월	징역 6월	징역 4월	
계	20	18	2	-	-	1	3	3	7	8	2
'26년	-	-	-	-	-	-	-	-	-	-	-
'25년	1	-	-	-	-	-	-	-	-	-	1
'24년	1	1	-	-	-	-	1	-	-	-	-
'23년	2	2	1	-	-	1	-	-	-	-	-
'22년	7	7	-	-	-	-	1	2	2	2	-
'21년	9	8	1	-	-	-	1	1	5	-	1

• 징역 선고기간별 현황

(‘26.5.31.기준, 명)

연도별	계	징역6년 (경합범)	징역4년6월 (경합범)	징역4년 (경합범)	징역2년 (경합범)	징역1년2월 (경합범)	징역8월	징역6월
계	8	2	1	1	1	1	1	1
'26년	-	-	-	-	-	-	-	-
'25년	-	-	-	-	-	-	-	-
'24년	1	-	-	-	1	-	-	-
'23년	1	-	-	-	-	-	-	1
'22년	2	-	1	-	-	1	-	-
'21년	4	2	-	1	-	-	1	-